산업통상부고시 제 호

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(제32조 및 제3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대가 산출 내역의 공개

제32조(대가 산출 내역의 작성) 발주청은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33조(대가 산출 내역의 공개 시기 및 방법) 발주청은 법 제31조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시(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시), 제32조에 따라 작성한 대가 산출 내역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2조를 제34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장 대가 산출 내역의 공개
<신 설>	제32조(대가 산출 내역의 작성) 발주청은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33조(대가 산출 내역의 공개 시기 및 방법) 발주청은 법 제31조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시(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시), 제32조에 따라 작성한 대가 산출 내역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32조 (생 략)	제34조 (현행 제32조와 같음)

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[별지 제1호 서식] (신설)

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(실비정액가산방식)

1. 일반현황

○ 발 주 청 :

○ 사 업 명 :

○ 사업기간 :

2. 산출내역

구 분 / 비 목		내역	금액	비고
① 직접인건비		[]부문 []등급		
		[]부문 []등급		
		[]부문 []등급		
		[]부문 []등급		
		[]부문 []등급		
소 계				
② 직접경비				
소 계				
③ 제경비				
④ 기술료				
⑤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				
⑥ 부가가치세				
총 계				

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[별지 제2호 서식] (신설)

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내역서(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)

1. 일반현황

○ 발 주 청 :

○ 사 업 명 :

○ 사업기간 :

2. 산출내역

구 분 / 비 목		요율(%) 또는 금액(원)	비고
① 요율 적용 대가	공사비		
	요율		
요율 적용 대가			공사비*요율
② 추가업무비용			
③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			
④ 부가가치세			
총 계			